

#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역할 증대방안 연구

\* 조익순 · \*\*김부영 · \*\*김영두 · †이윤석

\*, † 한국해양대학교 운항훈련원 교수  
 \*\*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상안전연구센터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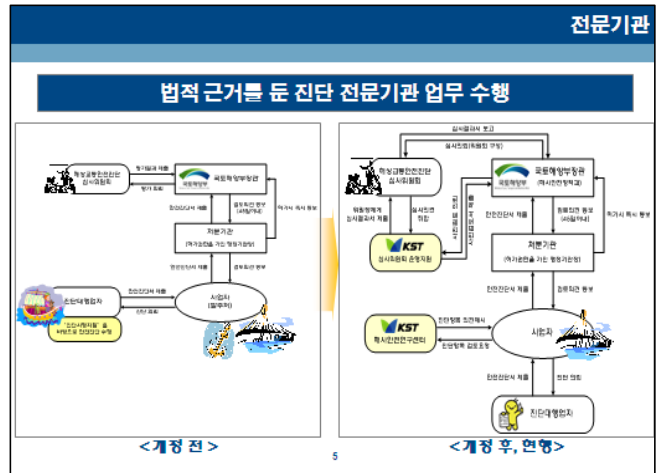
**요약** : 2011년 6월 ‘해상교통안전법’이 ‘해사안전법’으로 전부 개정된 후 진단시행지침의 전부 개정을 통해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상안전연구센터가 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국가업무에 대해 또는 위탁하는 형식이 아닌 진단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전문기관의 설립 및 역할이 불명확하여 정부의 예산지원이나 수수료 등의 징수 근거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안전진단, 시설물안전진단, 환경영향평가 등 유사제도의 전문기관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에서 전문기관의 존재 및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정부의 예산지원이나 수수료 등 징수근거가 명확한 상태에서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연속성 및 전문성 부재로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역할 및 권한 확대와 더불어 진단기술관련 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과제로 안정적인 전문기관의 역할 수행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전문기관의 설립 및 업무 위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핵심용어** :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 영향평가제도, 해사안전법, 법령정비

CONTENTS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전문기관 지정
3	운영현황 및 문제점 분석
4	유사제도 운영사례
5	법령정비(안)
6	결론 및 향후 과제

전문기관 지정	
KST 해상안전연구센터 전문기관으로 지정	
기존	개정(12.3.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 도입 후 담당 공무원의 잦은 변동으로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결여</li> <li>■ 해사안전연구센터는 제도도입, 운영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이고 전문적 대응 - 법적 근거 없이 제도 운영에 참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진단서 검토 및 심사에 대한 전문성,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제도 운영에 간사 등으로 참여해 온 해사안전연구센터 전문기관으로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업자의 등록요건 적합성 검토</li> <li>- 안전진단서의 사전검토</li> <li>- 심사위원회 개최방법</li> <li>- 진단항목 및 진단업종 의견 제공</li> </ul> </li> </ul>

연구배경 및 목적	
진단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역할증대방안 모색	
배경	연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 전부 개정을 통해 진단전문기관 지정</li> <li>■ 국가업무에 대한 위탁형식이 아닌 진단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li> <li>■ 전문기관 설립(존재), 역할(업무 수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징수 근거가 불명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분석</li> <li>■ 유사 영향평가제도의 전문기관 지정관련 법적근거 및 운영현황 비교</li> <li>■ 해사안전법 및 선박안전법 등 법령 정비(안) 제안</li> <li>■ 전문기관 역할에 대한 제언</li> </ul>
진단전문 공적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수익을 동시에 확보 가능한 역할 증대방안 마련 목적	



\* 주저자 : 조익순(중신회원), ischo@hhu.ac.kr

† 교신저자 : 이윤석(중신회원), lys@hhu.ac.kr

### 전문기관 지정 법적 근거

#### 법에서 언급한 전문기관을 시행지침에서 세부적으로 고시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해상고등안전진단시행지침
<p><b>제11조(안전진단서의 작성 및 제출)</b>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서의 검토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5 및 별표6에 따른 기준에의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처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안전진단서의 세부적 검토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b>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등)</b>          ① 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소)을 말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안전진단 대상업자의 등록신청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요건의 적합성 검토          2. 제19조에 따른 안전진단서의 사전검토          3. 제21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개최 방법          4. 기타 국토해양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p>

6

### 유사제도 운영사례

#### 유사제도 운영현황 분석(2)

핵심어용 협의 (핵심어용 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거 : 해양환경관리법</li> <li>- 주무부처 : 국토해양부(물오시 환경부)</li> <li>- 목적 :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방안 협의</li> <li>- 전문기관 : 국립수산업학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li> <li>- 전문기관 지정 법적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67조</li> <li>- 전문인력 : 박사급 연구원 약 10명</li> </ul>
법적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91조 (의견청문 등)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협의 등의 의견소 통보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이용협의의 등에 따른 영향검토 기관(이하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해역이용협의 등의 대상사업 중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 시행령 제67조 (의견청문 등) ③ 법 제9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이용협의의 등에 따른 영향검토기관"이란 국립수산업학원을 말하며, 같은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5 제2호의 간이해역이용협의의 대상사업을 말한다.</li> </ul>

9

### 유사제도 운영사례

#### 유사제도 운영현황 분석(3)

시설품목 안전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시설법'이라 함)</li> <li>- 주무부처 : 국토해양부</li> <li>- 목적 :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등에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중요성진</li> <li>- 전문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li> <li>- 전문기관 지정 법적근거 : 법 제38조(안전의 위임·위탁)</li> <li>- 전문인력 : 박사급 기술인력 약 39명</li> </ul>
법적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8조(안전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업무에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li> <li>1.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결과 검토 및 내진 보강의 권고</li> <li>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관리 및 실적확인서의 발급</li> <li>3.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평가와 평가에 필요한 관련자료의 제출요구</li> <li>4.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관리·운영 등</li> </ul>

10

### 유사제도 운영사례

#### 유사제도 운영현황 분석(1)

환경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li> <li>- 주무부처 : 환경부(물오시 국토해양부)</li> <li>- 목적 : 사업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저감방안 및 대책구</li> <li>- 전문기관 : 환경정책평가연구원</li> <li>- 전문기관 지정 법적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68조</li> <li>- 전문인력 : 박사급 연구원 약 30명이상</li> </ul>
법적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68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 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li> <li>1.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데이터)의 개발·작성·보완</li> <li>2. 환경영향평가의 기법 및 예측기법의 적정성 여부 평가 및 개발</li> <li>3. 제70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정보지원시스템의 운영</li> <li>4.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ul>

8

### 유사제도 운영사례

#### 유사제도 운영현황 분석(4)

교통안전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거 : 교통안전법</li> <li>- 주무부처 : 국토해양부</li> <li>- 목적 : 교통사고 유발 요인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술 통한 교통사고 감소</li> <li>- 전문기관 : 교통안전공단</li> <li>- 전문기관 지정 법적근거 : 교통안전법 제34조, 시행령 제23조</li> <li>- 전문인력 : 안전진단차 석·박사급 9명 이상</li> </ul>
법적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34조(교통시설설치자의 교통안전진단)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철도·공항·항만 등의 교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쪽한 교통안전진단 기관(이하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안전진단 공공기관(이하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li> <li>- 시행령 제23조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안전진단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li> </ul>

11

법령 정비(안)	
<b>제1안 : 해사안전법 정비</b>	
<b>추진방향</b>	- 해사안전연구센터의 설립과 역할 동시에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장수 근거 마련 * 유사사례 : 공공투자관리센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3조)
<b>업무위탁 근거신설</b>	<해사안전법 제15조(해상교통안전진단)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서의 검토요청을 받은 경우 제15조의2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센터에 안전진단서의 내용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b>센터설치 및 수수료 근거</b>	<해사안전법 제15조의 2 신설> ① 안전진단의 내용검토와 관련 의견제시 등을 위해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내에 '해상교통안전진단센터'를 둔다. ② 해상교통안전진단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진단 대상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관계기관 또는 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 등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	

법령 정비(안)	
<b>제3안 : 선박안전법 정비</b>	
<b>추진방향</b>	- 선박안전법 제46조(공단의 사업)에 안전진단 관련 업무 공단의 사업으로 설정
<b>업무위탁 근거신설</b>	<선박안전법 제46조(공단의 사업) 개정> 10. 해상교통안전진단서의 검토 분석 수행(사업) * 현행 10~11호는 11~12호로 변경
<b>수수료 근거</b>	<선박안전법 제80조(수수료) 개정>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b>대형선사 또는 외항기관이 이 법에 따른 검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형선사 또는 외항기관이 정하는 수수료</b> 당해 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7. 제46조 제10호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서의 내용 검토 및 분석 수행사업
<b>장단점</b>	- 공단의 설립과 사업법의 통을 규정하고 있는 선박안전법 내에 통합하여 일원화하여 규정하는 장점이 있으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화롭게 규정하기 어려움
15	

유사 법령사례	
<b>'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b>	
<b>법 제23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b>	
<p>① 대상사업의 검토, 사업타당성의 분석, 사업계획의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 등의 부설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둔다.</p> <p>②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p> <p>④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b>시행령 제7조(민간투자 제안사업의 추진절차)</b>	
<p>①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고,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서 사업용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확정하기 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해당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p>	
13	

전문기관 역할	
<b>전문기관 역할에 대한 제언(전문가 의견수렴결과 반영)</b>	
<b>방향성</b>	- 진단전문 공적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진단기관을 이끌 수 있는 기술적 역량확보가 필요하며, 사업자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가 필수적
<b>세부기준화</b>	- 기술기준 분야별 상세연구를 바탕으로 구체적 적용이 가능한 세부기준(해설서) 등을 별도로 두어 진단 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기술적 해석상의 충돌 예방 필요 - 일괄성 있고 효율적인 진단이 되기 위해서는 세부 사업유형별로 협의와 검토기준을 마련(가이드라인 등)
<b>D/B화</b>	- 진단사례의 D/B를 통해 장차 유사사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삼아 보고서 품질제고 방안 마련 * 진단보고서의 유사사례 및 미흡사례 D/B화
<b>국제화</b>	- 진단제도의 국제표준화를 위해 IMO 등 국제기구에 적극적인 홍보 및 Global Standard화 선도
<b>사후 모니터링</b>	- 사전안전진단결과와 실제 나타나는 현상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전문기관이 주축이 되어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16	

법령 정비(안)	
<b>제2안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및 진단시행지침 정비</b>	
<b>추진방향</b>	- 해사안전법 제99조(권한의 위임·위탁) 근거를 활용한 현행 고시(지침) 일부 수정
<b>업무위탁 근거신설</b>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진단서의 작성 및 제출) 개정> 현행)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안전진단서의 세부적 검토를 위하여 <b>관련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b> 개정)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안전진단서의 세부적 검토를 위하여 <b>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하는 전문기관의 의뢰할 수 있다.</b>
<b>수수료 근거</b>	<진단시행지침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개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 (중략) ...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진단대상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관계기관 또는 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4	

결론 및 향후과제	
<b>결론</b>	- 국가업무의 대형 및 위탁형식이 아닌 진단서 관련 의견수렴 제시는 수준의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 지정으로 관련업무 수행에 한계 존재 - 유사 평가제도의 경우 면에서 전문기관의 존재 및 역할수 명확이 규정하고, 예산지출이나 수수료 등 정수준거가 명확함 -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연속성 및 전문성 부재로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역할과 권한 확대가 필수적
<b>향후 과제</b>	- 안정적인 전문기관의 역할수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설립 및 업무 수행 위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전문기관의 진단관련 기술적 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 향상 필요
17	